



# EU 일반정보보호법 제정과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인영 연구원

여약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EU 회원국들의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목적으로 일반정보보호법을 공표함.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주된 내용인 일반정보보호법은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개인정보보호 강화는 사이버 보험 수요 확대 등 보험회사에 기회요인일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현행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할 일반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공표하였으며, 동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 EU 집행위원회가 개인정보<sup>1)</sup>보호 강화 및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2012년 유럽의회에 제출한 이후 4년 만에 제정됨.
  - 일반정보보호법은 지침이 아닌 규정이기 때문에,<sup>2)</sup> 기존에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단일 형태로 통합할 수 있게 됨.<sup>3)</sup>
- 일반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삭제권, 개인정보 이동권, 자신의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권, 개인정보 수집 거부권,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절차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음.<sup>4)</sup>

1) 일반정보보호법(GDPR)에서는 식별되었거나 식별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2) EU 법체계상 지침은 이를 기초로 회원국별 입법을 강제하는 구속력이 없지만, 규정은 발효 시 회원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님.  
 3) EC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이 각 회원국의 감독기구가 아닌 EU 차원의 단일 감독기구에 대해 대응하는 one-stop-shop 방식을 취함에 따라 기업 활동이 용이해지고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특히, EC에서는 개별법이 아닌 단일 법 준수로 매년 23억 유로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European Commission(2015. 6. 15), "Stronger data protection rules for Europe".  
 4) 정보주체들 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기존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의 정보제공 요청권, 접근권, 정정권, 처리제한 요청권 등에 잊혀질 권리(제17조)와 개인정보 이동권(제20조)이 추가되었음.

- 첫째, 정보제공자는 상시적으로 정보제공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도입으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sup>5)</sup>
- 둘째, 자신의 개인정보가 특정인에 의해 독점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셋째, 개인은 기업에 본인의 정보 열람 혹은 정보처리 현황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 사본 요청과 더불어 본인 정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님.<sup>6)</sup>
- 넷째, 프로파일링(profiling)<sup>7)</sup> 등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부여됨.

■ 일반정보보호법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보험회사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운영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

-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의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반정보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보험회사는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 처리, 보관,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함.
  - 잊혀질 권리의 경우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모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보이동권의 경우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경쟁사로 이전되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적용될 필요가 있음.<sup>8)</sup>

■ 한편, 개인정보보호 관련 배상책임보험과 같은 사이버 보험<sup>9)</sup> 시장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험회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법률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4%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 영국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kiri](#)

5) 다만, 공공보건 분야 혹은 통계·역사적·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함.

6) 정보제공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취급 현황을 요청할 경우, 기업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7) 프로파일링(profiling)이란 개인의 특성 특히, 경제력, 건강, 취향, 관심사, 신뢰도, 형태, 위치, 이동 등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처리임.

8)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상품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인 영업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Lexology(2016. 5. 24),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What Insurers Should Do Now to Prepare for Its Implementation".

9) 사이버 보험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방어비용, 회사가 관리하는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금, 정보보안 실패로 인한 정보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종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임.